
VI. 생명보험과 유류분, 특별수익

1. 유류분, 특별수익 산정 시 생명보험이 문제되는 이유

생명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수익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수익권을 취득한다. 수익권의 고유재산성을 강조하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수익자에 대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수익자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상속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생명보험은 법형식적으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류분 제도 및 특별수익 관련 법리는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실질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이 있다. 다음 항에서는 그간의 학설상 논의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상정가능한 견해들을 열거한 뒤,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 고민해 본다.

2. 상정가능한 견해들의 소개²⁰⁰⁾

가. 제한설

생명보험금청구권의 고유재산성, 생명보험 제도가 갖는 수익자 보장 기능 등 독자적 가치를 강조하여,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행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대상인 증여나 유증에 해당하지 않고,²⁰¹⁾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이 상속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험수익자인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관계, 각 공동상속인들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불공평이 특별수익 조정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특별수익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²⁰²⁾ 우리 학설 중에도 이러한 일본 판례의 입장에 공감하는 견해가 있다.²⁰³⁾

프랑스 보험법도 생명보험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권 행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법 제132-12조는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이어서 제132-13조 제1항은 보험금은 특별수익 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그의 자력(資力)에 비추어 명백히 과도한 경우 (Manifestement exagérées eu égard à ses facultés)에 한해 해당 보험료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프랑스 보험법 제132-13조 제2항). 이 조항은, 생명보험이 전통적으로 망인의 유족들(특히 부양필요성이 있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조항이다.²⁰⁴⁾ 또한 보험료 중에서도 특별히 과도한

200) 논의의 편의상 수익자 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경우만 살펴봄

201) 日最高判 2002(平14). 11. 5(民集56.8.2069)

202) 日最高判 2004(平16). 10. 29(民集58.7.1979)

203) 홍진희·김판기(2012a), pp. 218~219; 홍진희·김판기(2012b), pp. 314~315, 317~318; 양희석(2017), pp. 249~250

204) Cécile Pérès(2016), pp. 169~171(프랑스 판례가 보험계약을 상속법의 법리와 분리하여 특별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경제논리 - 가령,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반환의 대상으로 본 배경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소액 보험료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보험료까지 유류분 반환 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배려가 놓여 있다고 사료된다.

나. 보험료 기준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지출한 보험료 상당액을 유류분 반환 및 특별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견해이다.²⁰⁵⁾ 보험료 기준설은, A가 자신의 돈으로 100원짜리 복권을 사서 B에게 주었는데 그 복권당첨금이 1억 원인 경우, A가 B에게 100원을 무상증여했다고 보는 생각과 비슷하다. 이 견해는 생명보험의 '실질'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에게 수익자에게 무상출연을 하였다든 점은 인정하지만, 무상출연의 범위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재산으로부터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외국의 경우, 변경되기 전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가 보험료 기준설을 택하고 있었고,²⁰⁶⁾ 영국,²⁰⁷⁾ 이탈리아²⁰⁸⁾는 입법을 통해 보험료를 유류분청구 등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 해약환급금 기준설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유류분청구 등의 대상으로 삼는 견해이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까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책임재산으로 갖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위 금원을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간접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⁰⁹⁾ 이 견해는 A가 자신의 돈으로 100원짜리

자금이 대규모로 국채에 투자되었고, 생명보험을 더 이상 특별취급하지 않아 개인들의 생명보험 가입 유인이 감소하는 경우 공적 금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 가 작동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함)

205) 변동열(2003), p. 839

206) BGHZ 7, 134

207) 영국의 Inheritance(Provision for Family and Dependents) Act 1975 제10조 제2항 (a), 제7항 참조(망인 사망 시점부터 6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료는 반환의 대상이 됨)

208) 이탈리아 민법 제741조(특별수익), 제1923조 제2항(유류분, 기간제한 없음) 참조

209) 노일석(2010), p. 212; 정구태(2011), pp. 288~289; 김주수·김상용(2015), p. 436; 박병호(1999), p. 477; 이경희(1995), pp. 111~112; 이진만(1997), p. 374

물건을 사서 B에게 주었는데, A가 그 물건을 B에게 주기 직전 그 물건의 시장가치가 1,000원이었다면 A는 B에게 1,000원을 무상증여했다고 보는 생각과 비슷하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줄 수 없고 무상출연자도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그의 해약환급금채권이 소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수익자에게 해약환급금채권 상당액을 무상출연하였다는 것이다.

스위스 민법은 명문으로 해약환급금 기준설을 택하고 있고(스위스 민법 제476조, 제529조), 독일 연방대법원도 현재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¹⁰⁾

라. 보험금 기준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간접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A가 자신의 돈으로 100원짜리 복권을 사서 B에게 주었는데 그 복권당첨금이 1억 원인 경우, A가 B에게 1억 원을 무상증여했다고 보는 생각과 비슷하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생전에 한 번도 보험금 상당액을 가져 본 적이 없지만 수익자가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얻은 이상, 보험금을 유류분 반환 및 특별수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²¹¹⁾

오스트리아 판례,²¹²⁾ 미국의 Uniform Probate Code,²¹³⁾ 캐나다 온타리오 주²¹⁴⁾가 보험금 기준설을 취하고 있다.

210) BGHZ 185, 252. 독일연방대법원이 2003. 10. 23. 판결을 통해 -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 생명보험 수익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시 보험금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BGHZ 156, 350), 유류분반환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Claus Elfring, "Das System der drittbezogenen Ansprüche bei der Lebensversicherung NJW 2004, 483; Johannes Kuhn/Hubertus Rohlfing, "Die Lebensversicherung im Erbrecht", ErbR 2006, 11), 독일연방대법원은 - 부인권 행사 국면과는 달리 - 해약환급금기준설을 택하였음

211) 박윤직(2004), p. 191; 김능환(1998), p. 30; 박동섭(2011), p. 69; 조성필(2017), p. 88

212) OGH 10.6.1997 4Ob136/97x

213) UPC §2-205(1)(D) 참조

214) Succession Law Reform Act, R.S.O. 1990, c. S.26, Section 72 (1) (f) 참조

3. 검토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이 문제는 법이론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적 문제에 가깝다. 필자로서는 보험금 기준설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이론적으로는 보험료 기준설이나 해약환급금 기준설도 설득력이 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공짜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 기준설에 따르면 유류분제도의 무력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보험료도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지급하였다면, 수익자는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제1114조 참조). 또한 해약환급금 기준설은 수익자의 관점에서 다분히 의제적이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가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피보험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고 구성하는 것은 어색하다. 수익자가 얻은 무상의 이익은 보험금 상당액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은 소액이지만 보험금은 다액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설에 따르면 유류분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법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당에,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공짜로 줄 수 없다.”는 범명제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된다. 실질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류분제도의 형해화 방지, 규범회피행위의 방지에 있다면, 가급적 수익자가 받은 금액(=보험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필자는 제한설이 우리법 해석론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²¹⁵⁾ 제

215) 이에 관해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제한설을 취하고 있던 벨기에 보험법에 대하여 2008년 벨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시사적임. Cour const Belge, 26 juin 2008, arrêt n° 96/2008(벨기에 보험법 제124조 - 프랑스 보험법 제132-133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즉, 보험계약자의 자력에 비해 보험료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보험료에 대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지급보험료 합계가 보험금을 초과하면 유류분반환액은 보험금을 상한으로 한다는 취지) - 가 벨기에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벨기에 보험법 제124조는 원래 ① 생명보험의 보장적 기능을 고려하고, ②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적정 금액만 지급되므로 지급된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재산 감

한설이 강조하는 수익자의 생활보장은, 수익자의 생활보장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면 된다(그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거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생명보험이 유족의 생활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저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생명보험을 일률적으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금 기준설을 취한다면,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²¹⁶⁾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보험수익자의 생활보장과 유류분권자의 권리 중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법률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수익권 부분에 관하여 수익자가 무상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생전 부양의무 이행의 연장선상에서 수익권 상당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수익자가 무상의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익권 상당액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류분권자도 수익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익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입법된 것인데, 오늘날 생명보험은 보장기능보다 투자·저축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유류분이 증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판례는 지적함.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의 형태로 저축을 한 경우 유류분권자가 보험금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즉, 유류분반환권면에서 생명보험 수익자를 다른 무상취득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함

- 216)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외국 입법례를 보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인 경우 수익권(또는 수익권 중 일부)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음. 가령, 퀘벡주 민법 제2457조, 온타리오주 보험법 제196조 제2항 참조. 스위스, 독일, 뉴욕주의 사례에 관해서는 최준규(2018), pp. 395~396 참조